

## 효율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나머지 2%

김 명 주 교수/서울여자대학교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수석부회장)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화 확산 현상은 놀라운 순기능에 못지 않게 적지 않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 및 오남용 현상도 여기에 속한다.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필요한 조직과 정책을 부서별로 수립해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라는 목표는 단기간에 상당부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여전히 사회는 2%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이 부족한 2%를 다시금 채우려고 과거에 이루어진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2%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개정하려는 법이란 최소한의 규제이며, 개선하려는 제도와 조직이란 사회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골격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전방위적 상승효과는, 법과 조직 개선이라는 영역을 뛰어넘는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해진다.

개인정보의 침해 및 오남용 현상에 있어서 원인제공은 의도성과 상관없이 개인에게 일차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인터넷기반의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의식(이를 함축하여 인터넷윤리라고 부름)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편적 문제점을 숙지하며, 문제발생에 따른 자기구제적 노력을 펼칠 줄 알아야 한다. 글로벌 시민사회의 새로운 시민의식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계도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는 공교육 커리큘럼 안에 인터넷윤리 확산을 위한 여지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및 오남용 현상이 주로 인터넷서비스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의 취득과 활용 전반에 걸친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전체 인터넷서비스업체에 대하여 적용한 후 그 평가 및 인증 결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증평가 작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은 다양한 인터넷서비스업체의 건전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보유하게 되어 서비스 활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서 사회전반에 걸친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법률과 규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한 부분을 힘껏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관련 기술개발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Do Not Track 규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이 뒤

따라야 되며, 우리나라가 EU Data Zone에 편입되기 위해서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수준 인증에 필요한 표준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사회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역시 <잊혀질 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영역이므로, 이것 역시 관련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사회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 조직의 지속적인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영원히 충분해질 수 없다. 항상 2%가 부족한 셈이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터넷윤리 의식 제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평가인증 실시, 법과 규제를 지원하는 기반 기술의 개발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